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8호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도봉동 350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

2019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35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	증) 25,852.8	25,852.8	-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수정사항: 건축물 용도계획, 공동개발 계획, 공공보행통로 해제, 건축한계선, 대상형 전면 공지 폭원 등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다. 정비계획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도봉구청장	해당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52.8	-	25,852.8	100.0	-
합계		25,852.8	-	25,852.8	100.0	-

3)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도시가스 설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810m
	노후 상하수도 정비	상·하수도 정비	500m / 570m
	화재 및 방재시설 설치	비상소화장치함 보이는 소화기 제설장비 설치	1개소 5개 1개소
	CCTV 및 비상벨 설치	회전식 CCTV 및 비상벨 설치 고정식 CCTV 설치	2개소 8개
	골목길 안전확보	안전거울(미러시트) 설치 LED 볼라드 설치 슬라표지병 설치	5개 80개 230개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LED 보안등 교치 및 신설	41개
도봉산과 어울리는 마을	마을입구 강조	마을간판, 마을지도, 마을게시판 등 설치	2개소
	도로포장 (기반시설 정비)	보·차도 포장 및 정비	400㎡
	담장 철거·정비	공공사업 추진시 붕괴위험 담장 철거·정비	12개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건축물 신축 토지보상비	1개소 388㎡ (후보지1)
	마을정자 정비	마을정자 정비	1식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97	8	국지 도로	139 (60)	도봉동 353-1	도봉동 384-4	안골	일반도로	도고 제25호 (1996.05.07.)	-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40 (34)	도봉동 378	도봉동 352-8	안골	일반도로	서고 제103호 (1974.07.26.)	소로 3-525에 포함
기정	소로	3	525	6	국지 도로	201 (201)	도봉동 384-4	도봉동 352-35	안골	일반도로	서고 제543호 (2009.12.31.)	-
변경	소로	3	525	6	국지 도로	241 (235)	도봉동 384-4	도봉동 353-27	안골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26	6	국지 도로	19 (4)	도봉동 344	도봉동 353-23	안골	일반도로	-	-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신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미확정	공동이용시설	-	-	-	-	-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확정 (후보지 2개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분할전)	비고
후보지 1	공동이용시설	도봉동 348	388㎡ (955㎡)	신축
후보지 2	공동이용시설	도봉동 287-2	377㎡	신축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6)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

(1)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신설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25,852.8	주택 및 근린생활	60%이하	기준 : 116% 허용·상한 : 150%	3층, 16m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하여 4층 이하로 완화 가능

※ 본 대상지는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고
신설	67동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

- ※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제도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 개량
 ※ 서울시 관련부서 지원정책에 따라 변경가능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해당사항 없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
	생활환경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 방지	풍수해	•도봉산 아래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노후 상하수관 교체 •구역 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계획 수립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수시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사 등 사전예방 조치 - 풍수해 발생시 긴급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체제 확립	-
	화재	•구역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골목길 등)은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소화장치함 및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 •개별 주택 신축 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함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 대상지 반경 200m이내 도봉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음
- 대상지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교육 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향후 정비사업 진행시 교육환경에 위해한 시설 입지 지양

10)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정비계획 결정 이후 주민 10%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예정 (도봉구청장) •열린운영회 구성으로 주민의 참여기회 제공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마을축제, 마을공동체 서비스, 마을기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 및 운영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계획실행방안
자연 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보안등 정비 등을 통하여 조도개선	• LED보안등 교체 · 신설(41개소) • 안전거울(5개소), LED볼라드 (240m), 솔라표지병(230m) 설치
	• 골목길은 전방시야 확보 및 고립된 공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행록 확보	• 건축한계선 계획을 통해 골목길 내 전면공지 확보
	• 투시형 벽(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여 주변감시와 골목길 활용성 증대	• 담장은 미설치를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 식대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권장
영역성 강화	• 등산객 등 외지인이 마을내를 방황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 마을간판 및 마을지도 설치 (2개소)
	• 방치된 노후 자투리 공간을 쌘지형 공지나 화단 등을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 쌘지형공지 조성 (1개소)
	•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이나 벽화 등의 적용을 권장 • 건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하도록 유도	• 도봉산 인접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건물 형태 및 외관계획
활동의 활성화	• 주민들의 교류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확대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 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
	• 자투리 공지, 쌘지형 공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활동공간 조성	• 쌘지형공지 조성 (1개소)
유지 관리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마을환경의 자체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노후화를 방지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운영
방법용 CCTV 설치	• 방법용 CCTV는 마을 내 범죄취약 공간을 중심으로 효율성(가시범위, 주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 회전식 CCTV 및 비상벨 설치 (2개소)
	• 마을 내 주요도로의 고정적 감시를 위하여 고정식 CCTV설치	• 고정식 CCTV설치 (4개소)
방법 거점 조성	•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법거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성	• 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범위	최대개발규모(㎡)	계획내용
기정	구역전체	-	• 최대개발규모 적용배제
변경	구역전체	330㎡이하. 단, 구심의를 통해 500㎡까지 완화가능	• 기존 단일필지, 계획지침이 적용된 대지(필지분할가능선, 공동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최대개발규모 적용 배제

나) 가구,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계획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5개 가구
획지계획		•안골 북측지역 : 동일소유자 필지, 3개 획지 •안골 349번지 일대 : 블록개발 유도, 6개 획지	9개 획지
공동 개발	지정	•과소 필지, 맹지형 필지	3개 지정
	권장	•부정형 필지	2개 권장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계획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변경없음
획지계획		•획지계획 삭제	0개 획지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계획 삭제	0개 지정
	권장	•맹지형필지, 과소필지 면적의 2/3미만 필지(60㎡)	10개 권장

※ 과소필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 9항에 따라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를 말함

※ 과소필지 면적의 2/3미만필지는 계획지침(건축한계선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안골지역은 기 동일인 소유, 기개발된 대지는 공동개발 계획을 예외로 함

- 자율적 공동개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개발가능 • 안골지역 획지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획지계획 삭제에 따른 문구 삭제
변경	•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개발가능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허용용도/권장용도)

- 기정

구 분	도면표시	전 총	비고
허용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A, C	• 단독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획지④,⑤,⑥,⑦,⑧,⑨는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 규모 : 5,000㎡ 이상, 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
	권장용도 a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변경

구 분	도면표시	전 총	비고
허용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B	• 단독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 규모 : 5,000㎡ 이상, 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
	권장용도 b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 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B1~5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 / 허용·상한 용적률			116% / 150%이하				
중점계획목표			대지내 공지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권장	• 기준용적률 × 0.05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		－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8		－		
	도시경관 개선	경사형 지붕	• 기준용적률 × 0.1		－		
담장미설치		• 기준용적률 × 0.1		－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 기준용적률 × 0.1		－		
	공동개발	지정	• 기준용적률 × 0.1		－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1.8		•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0		－		
의무형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4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		－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1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 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1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 기준용적률×0.2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16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1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B1~5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 / 허용·상한 용적률			116% / 150%이하				
중점계획목표			대지내 공지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계획 유도	공동개발	권장	•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		-		
	필지분할 가능선	권장	• 기준용적률 × 0.05		-		
	도시경관 개선	경사형 지붕	• 기준용적률 × 0.1		-		
		담장미설치	• 기준용적률 × 0.1		-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8		-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1.8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0		•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친환경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4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 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		-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1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1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 기준용적률×0.2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16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1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방향	•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 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5호
	배치	• 이웃건축물과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건축한계선	•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 (획지④~⑨), 3m~6m(보차혼용통로)	결정도참조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붕	• 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
	1층부	•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권장	-
	외벽	•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권장	-
	색채	•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방향	•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 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배치	• 이웃건축물과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적상 도로중심으로부터 2m~3m, 건축한계선 2m~6m	결정도참조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붕	• 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5조 참조
	1층부	•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면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권장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2조 참조
	외벽	•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권장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3조 참조
	색채	•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라)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 위치 : 획지④, 획지⑤, 획지⑦, 획지⑧ • 최소 2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이상	결정도참조
	전면공지	• 차도형 전면공지 -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 (획지④~⑧) • 대상형 전면공지 : 4m (획지 ⑨)	결정도참조
통로	보차혼용통로	• 위치(3개소) - 도봉동 352-16 352-25번지 및 ①획지, 도봉동 384-10 및 383번지, 도봉동 352-27일대 • 폭원 : 6m , 4m	결정도참조
	공공보행통로	• 위치(1개소) : 획지⑦ • 폭원 : 4m	결정도참조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 위치 : 도봉동 348번지 • 최소 2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이상	결정도참조
	전면공지	• 차도형 전면공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적상 도로중심으로부터 2m~3m, 건축한계선 2m~6m • 대상형 전면공지 : 2m (도봉동 287-2번지 일대)	결정도참조
통로	보차혼용통로	• 위치(6개소) - 도봉동 352-25 일대, 384-10 일대, 352-27 일대, 287-2일대, 384-2일대, 287일대 • 폭원 : 6m , 4m	결정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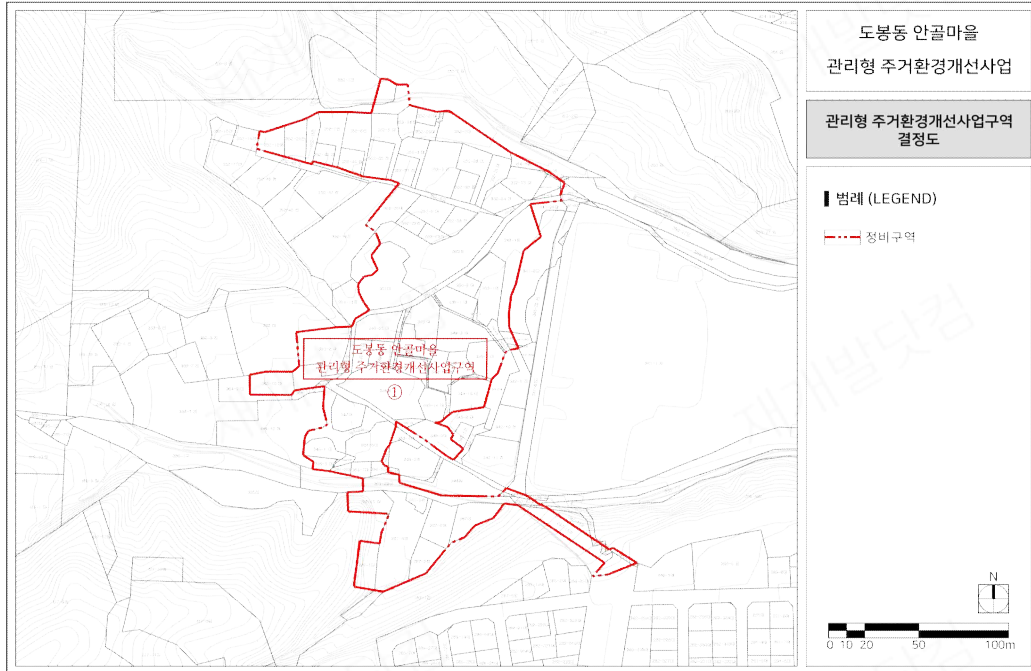
2. 관련도면: 불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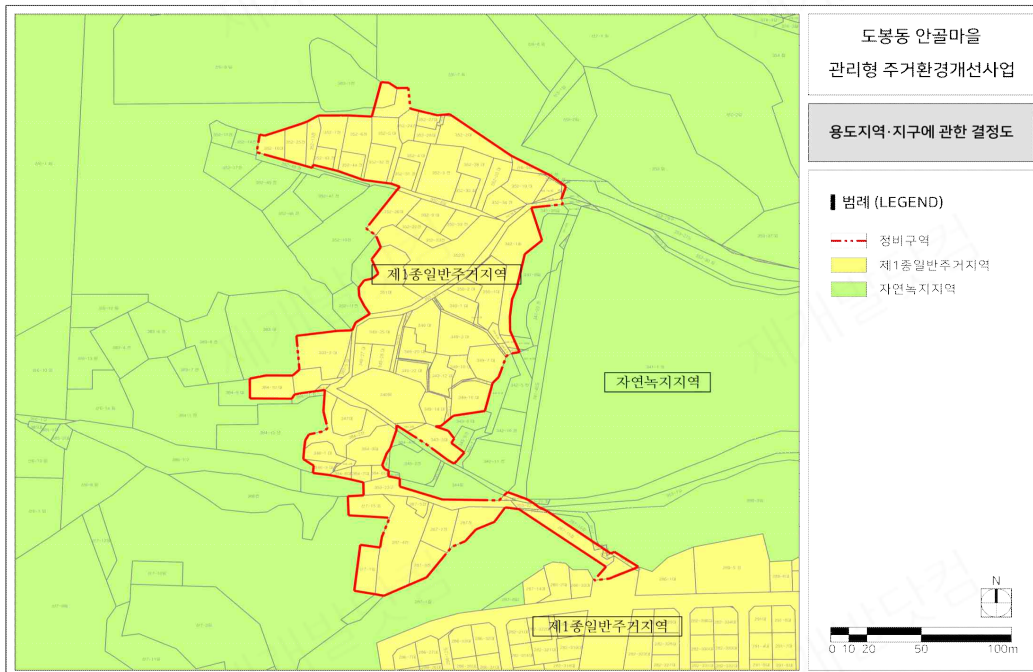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

3. 고시 관련된 세부 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49) 및 도봉구(도시계획과, ☎ 02-2091-3563)에 비치되었으며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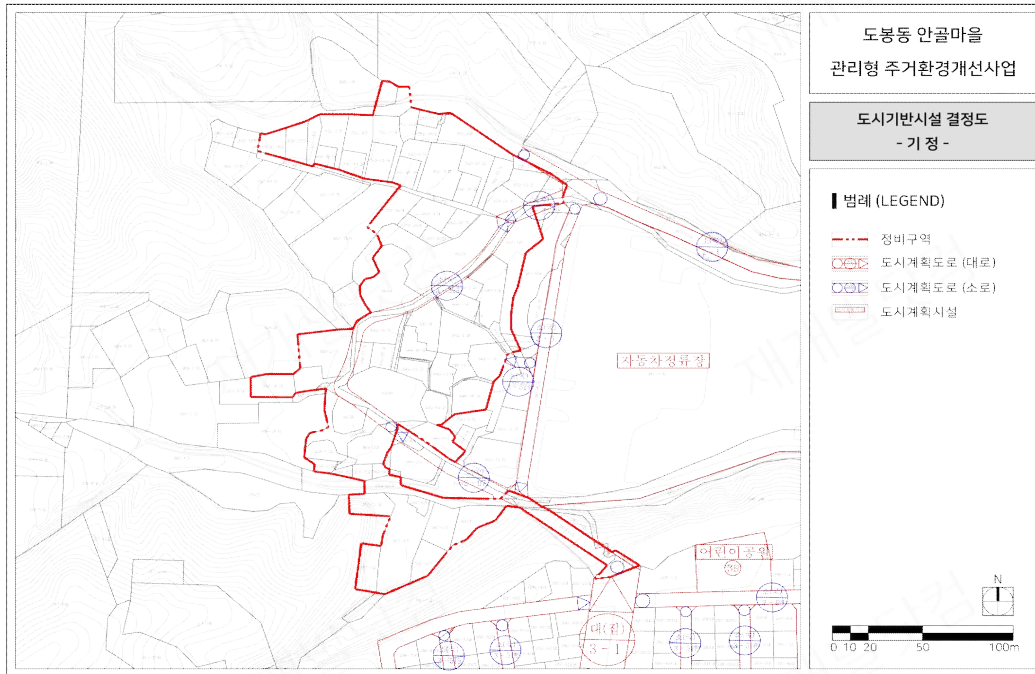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 정 -



- 변경

